제 2370호
2015. 06. 02.

발 행 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
편 집 인 : 공 보 실 장 장 운 기
전화 : 3396-4965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◉ 공 고
제2015-378호 : 산당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공람·공고 ····· 2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http://www.junggu.seoul.kr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◉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65 / FAX.(02)3396-9024
◉ 구보는 수시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
람												

서울특별시중구

2370호 3-2 2015.06.02.

공 고
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-378호

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공람·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89호(2006.05.18.)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7-55호(2007.06.28.)로 정비구역 변경·결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 신당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』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을 실시합니다.

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6월 2일

중 구 청 장

○ 공람기간 : 2015.6.2.(화) ~ 2015.7.3.(금)

○ 공람의견 제출장소 : 중구청 주택과(☎02-3396-5723)

○ 게재방법 : 중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

○ 공람내용 : 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

- 사업명칭 : 신당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사업위치 :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
- 사업면적 : 43,039.1㎡

○ 해제사유 :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조의3 제1항 5호(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) 규정에 의거 해제

○ 정비구역지정 해제내용

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

나.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

구 분	생활권 유형	구 역 번 호	동명	지 번	면 적	용적률	층수	건폐율	추 진 단 계	사업시행 방식	정비 유형	비 고
기정	A	10	신당1동	236 번지 일대	4.3ha	210%	제한없음	50%	2	주택 재개발	전면 개발	
변경	해 제											

○ 위치도 및 구역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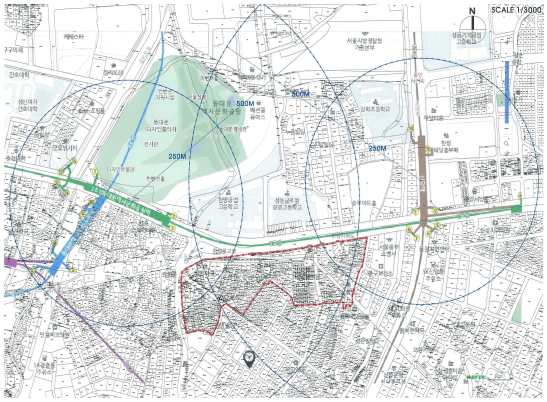	
위 치 도	정비구역도